

「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춘남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영태, 김원섭, 김정도, 소진혁, 신용하,
양진오, 이상호, 이지연, 추은희, 정지원 의원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춘 남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에 새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 계획수립을 신설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더 추가·보완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3조~제5조)

-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(안 제6조)
-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내용 추가(안 제13조)
-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 삭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0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가·보완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한 것은 체계적인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안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

하고, 관련 부서 간의 업무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또한, 여성기업지원 시책 등을 여성 경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